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4.20.)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 목 차 】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 7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5.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7.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33
8.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38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46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개정이유

-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안제도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1조)
 -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제안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함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제안을 명확히함.
(안 제3조)
 - '제안'과 일반 '의견 제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
- 라. 제안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

- 여부와 창의성, 노력의 정도 등을 강조함(안 제5조)
- 마.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제안의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 등을 결정토록 함 (안 제6조)
- 바.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 토록함.
(안 제7조)
- 사.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특전 부여(안 제8.9조)
 - 채택제안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며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제안규정」, 「국민 제안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나. 예산조치: 당초 예산확보(23,700천원)
-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다. 입법예고(2012.03.13. ~ 2012.04.04.)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2011. 01. 05) 조례 제2006호로 제정하여 운영해오던 조례로서
-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사항

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제안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제안'과 일반 '의견 제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
-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창의성, 노력의 정도 등을 강조함.
- **안 제6조**에서는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제안의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 등을 결정토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함.
- **안 제8.9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8.24]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 2011.6.8 대통령령 제22965호]

□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 2011.6.7 대통령령 제22957호]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제안이유

-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거창군민의 날을 정함 (안 제2조)
 -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가능)
- 다. 군민의 날 행사시 통합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기념사업 등
- 라.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거창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2.02.13 ~2012.03.04)결과: 1건 접수(반영 1건)

○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 폐지: 농업기술센터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군민의 날을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와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그 밖의 기념행사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내용으로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민상조례(조례 제1928호) 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1항 내용 중 “거창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로 한다”에 근거하여 군민의 날을 매년 9월 25일에 시행해 오던 것을

○ 별도의 거창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제각기 추진되어 오던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 『아름 예술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평생학습 축제』 『거창 사과마라톤』 등을 통합 행사로 추진하여 각종 홍보물과 무대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사의 효율성 증대로 거창의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 하여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군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함(안 제5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의 개정내용 중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함
 -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 나. 숙박비 지급 기준액 조정(안 별표)
 - 제2호 숙박비 지급 기준액 30,000원을 40,000원으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 당초예산확보: 2,361백만원(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2. 03. 09. ~ 03. 31)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며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
- **안 [별표]**에서는 숙박비 지급기준액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501호, 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2.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월평리 일부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남상면 월평리(15필지 217,733㎡) 일부를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함
 - 월평리 214, 1328, 1373 - 2, 1348, 1372 -1, 1373 -1, 1594 -6, 1594 -7, 1598 -2, 1598 -4, 산6, 산45 -14, 산45 -15, 산45 -18, 산45 -19번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2.03.06. ~ 2012.03.26.)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월평리 일부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 **안 [별표1]** 에서 남상면 월평리(15필지 217,733㎡) 일부를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서
- 이 개정 조례안은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22호, 2011.10.14, 일부개정]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개정이유

-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우리군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비 지원이 요구되는 등 교육에 대한 군의 역할이 가중되고 교육 여건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변경함(안 제3조)

-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15%범위안 ⇒ 해당연도 예산범위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13조)

- 각호 ⇒ 각 호, 한 때에는 ⇒ 한 경우에는
- 당해 ⇒ 해당, 인 ⇒ 명, 기타 ⇒ 그 밖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확보: 3,459백만원(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2.03.13. ~2012.04.04.)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외국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군비 지원이 증가되어 교육에 대한 군의 역할이 가중되고 교육 여건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 당해연도일반회계 지방세의 15%범위안 ⇒ 해당연도 예산범위

☞ 2012년도 지방세 총액 17,889백만원으로 기준액(15%)은 2,683백만원이나 3,578백만원(20%)이 편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의 제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37,518백만원)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34,378백만원)를 충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그 외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1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 도내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등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 1. 11] [법률 제10221호]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1.1.28, 2006.12.3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개정 2000. 12. 2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개정이유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는 1991년 12월 19일(조례 제1238호)로 제정되어 2008년 7월 11일까지 5차 개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행정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동안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함(안 제3조)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다. 사용허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마.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부업훈련과정, 취미교실과정, 아동교실의 수강료를 인상함(안 별표 1)
- 1개월 8,500원 ⇒ 1개월 10,000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복지향상 및 공익 목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함(안 별표2)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의 사정으로 복지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였음(별표 3)

바. 위탁운영 규정(근거)를 둠(안 제8조)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준용규정을 둠(안 제9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별표 2
- 「지방자치법」 제13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기획감사실,

다. 입법예고(2012. 02. 15. ~ 2012. 03. 06.)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사업내용을 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사용허가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별표1**에서는 부업훈련과정, 취미교실과정, 아동교실 수강료를 인상함.
 - ☞ 1개월 8,500원 ⇒ 1개월 10,000원
 - **안 별표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복지향상 및 공익 목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 **안 별표3**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의 사정으로 복지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 규정(근거)를 두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타법개정]

제21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관장: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

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와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22조제3항관련)

사업분야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1. 가족복지사업	(1)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상담 및 검사: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2) 가족기능 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아동 대상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3)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신체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정신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위기가정 문제: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폭력·학대: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4) 부양가족 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운영, 무료급식
	(2)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사업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3)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5) 정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6)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p>3. 지역사회 조직사업</p>	<p>(1)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p>	<p>○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주민모임, 주민동아리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환경운동, 소비자고발운동, 쓰레기재활용운동 등 -주민의식교육: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p>(2) 복지네트워크 구축</p>	<p>○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지역내 복지시설과의 연계사업 등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p>(3) 주민복지 증진사업</p>	<p>○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행사: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시설개방: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정보제공: 일상생활 및 복지 관련정보제공
	<p>(4)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p>	<p>○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p>○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전달하거나 관련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문화 사업	(1)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운영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洋裁),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교양강좌: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3) 노인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건강운동교실: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춤교실 등 -교양교육프로그램: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경로당 지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캠프, 청소년 동아리, 장애인 문화체험 등 -주민문화행사: 영화상영, 춤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센터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4) 자활공동체육성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12.
- 나. 제출자: 백범영·조선제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제정이유

-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안 제3조)
- 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마.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안 제5조)
- 바.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안 제6조)
- 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 군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우수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차. 군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본 조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2. 04. 13. ~ 2012. 04.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안 제5조**에서는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우수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본 조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각종장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12.
- 나. 제 출 자: 강철우·강창남·안철우·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제정이유

-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 마련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함

- 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과 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 마.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둠(안 제9조)
-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2. 04. 13. ~ 2012. 04.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 마련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11.12.31 법률 제1114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1.6.7> <시행일 2012.12.8>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2.1.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시행일 2012.12.8>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

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시행일 2013.6.8>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5.27>
-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 ⑦ 삭제<2011.6.7> <시행일 2012.12.8>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12.8>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시행일 2012.12.8>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2011.6.7> <시행일 2012.12.8>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5.27>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12.
- 나. 제 출 자: 이성복·안철우·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토록 규정함
- 나. 5년 단위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시설개선과 도서 자료 확보,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단체) 행사 지원
- 학술행사, 독서교육, 연령·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백일장,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행사 개최 및 지원

라.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독서의 달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연계 강화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2.04.13.~2012.04.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5년 단위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시설개선과 도서자료 확보,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독서의 달 운영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연계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09.3.5 법률 제947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